Crowe

한울회계법인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8년 12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19 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분야 사전 예고
-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질의회신요약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세무 및 법률정보

- 2018 년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2. 11]

개요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19 년에 중점 점검할 4 가지 회계이슈는 금번('18.12 월)에 미리 공표하고, '19 년 중 대상회사 선정 및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

-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기업들은 '18 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중점점검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결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점점검 4대 이슈사항

[중점 점검 4 대 이슈사항]

[참고]

-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심사감리는 폐지
-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
-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에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

변경되는 회계감독방식

변경되는 회계감독 방식

2. 2019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가.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 (선정배경) 신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 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얄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 및 관련 영향공시의 적정 여부, 수익인식 판단근거 등에 대한 설명의 충분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

['신수익기준(K-IFRS 1115)'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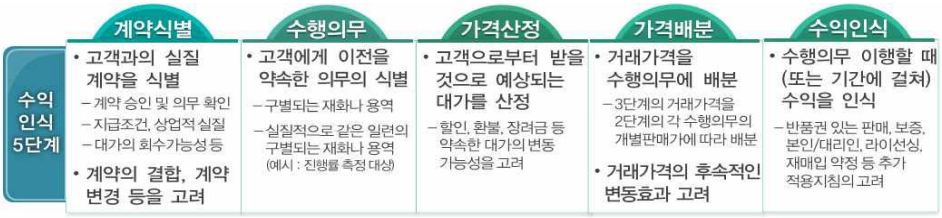

회계오류 예시

- 전기부품 제조사인 코스피 상장 □□사는 기존 대리인으로서 순액으로 회계처리하던 유상사급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만 바뀔 뿐 거래약정의 특별한 변동이 없음에도 이를 총액으로 변경 회계 처리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 인터넷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사는 자산인식 요건(직접관련성, 식별가능성회수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 비용을 계약이행원가로 하여 자산계상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재무영향공시를 부실기재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 자산화요건을 충족하여 자산으로 인식한원가(예: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에 장착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등)

- 코스닥 게임개발사인 ○○사는 회사 소유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접근권)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을 약정된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

□ (선정기준) 신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 선정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나.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 (선정배경) 금융상품 관련 신기준서의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의 중요성이 증대

['신금융상품 기준(K-IFRS 1109)' 분류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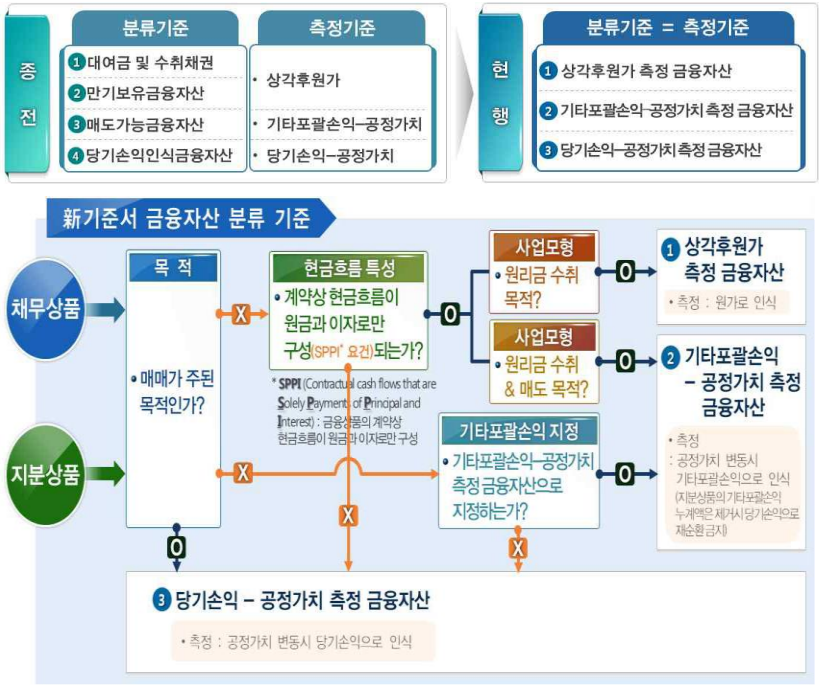

회계오류 예시

- 코스피 상장 식품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지분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시 제 3 자와의 거래도 없어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사용하면서 자의적 판단을 통해 관련 자산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 코스닥 통신장비 제조업체 △△사는 보유중인 혼합형펀드(환매가능 수익증권)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미반영

- 운송장비 제조 코스닥 상장사인 ○○은 보유중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을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당기손익으로 이전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신기준서 영향공시 현황,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과 관련하여 부실외부평가로 인한 자산 과대평가 사례가 빈번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손상평가 이슈 등이 발생

회계오류 예시

- 코스닥 연구개발업체인 □□사는 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취득시 합리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정한 피투자회사의 사업계획서상 매출 추정치를 그대로 활용한 결과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코스피상장 종합개발사인 △△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동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순자산 가액 대비 고가로 취득한 이후, 결산시 할인율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한 외부평가에 따라 동 주식을 과대평가한 결과 관련 영업권 등의 손상을 미인식

- 코스닥 식음료업체 ○○사는 종속기업주식에 대한 회수가능가액 검토시 부실 외부평가에 의존하여 미래현금흐름을 과대평가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주식에 대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투자주식 및 영업권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대상 회사 선정

무형자산 인식 평가의 적정성

라.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 (선정배경) 무형자산(개발비·영업권 등)의 인식 및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

◦ 특히, 개발비 자산화와 관련하여 그간 무분별했던 업계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최근의 계도 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증선위)

회계오류 예시

- 코스닥 바이오업체 □□사는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약효 및 인체 안전성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지출비용을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사는 방송사업권(무형자산)의 취득절차 완료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동 무형자산 취득과 관련 없이 발생한 지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다시 집계하여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코스피상장 ○○사는 해외 광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고, 수익성 악화로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손상검토를 소홀히하여 관련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 (선정기준)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 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등을 종합하여 대상회사 선정

향후계획

3. 향후 계획

□ 2018 년도 결산 재무제표 작성시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하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

◦ 회계오류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점검 실시 예정

□ 한편,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

◦ 2020 년 중점 점검분야는 '19.6 월에 선정하여 회사·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쟁점이 되는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8년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18.12.8(토) 국회에서 확정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2018. 12. 8 (토)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가 8월 31일에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1. 소득세법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16의2)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300~1,800만원* *①만기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 :1,800만원 ②만기15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1,500만원 ③만기15년이상인 그 외 차입금: 500만원 ④만기10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식):300만원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이하	- 기준시가 5억원이하

<수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완화
<시행시기> '19.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아동수당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 보완(소득법§59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자녀세액공제 대상 - 만 6세 이상의 자녀 - 만 6세 미만의 자녀로서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지급받은 자녀 등	○ 자녀세액공제 대상 -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삭 제> *아동수당 100% 지급반영

<수정이유> 아동수당 제도 변경 반영*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3)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64의 2)

정 부 안	수 정 안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분리과세시 세액={수입금액X(1-필요경비율)-공제금액}X14% - (필요경비율)임대주택등록자70%, 미등록자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적용	○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 조정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60%, 미등록자50% - (좌 동)

<수정이유>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부담 적정화

(4)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 신설)

정 부 안	수 정 안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년간 적용 유예 - (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 (적용제외) '18년 소득분	○ 가산세 2년간 적용 유예 - (좌 동) - (적용제외) '18년·'19년 소득분

<수정이유> 제도시행('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5) 적격 P2P 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시행시간 변경(소득법§129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적격 P2P금융 원천징수세율 인하 - (세율) 현행 25% → 14% - (시행기간) '19.1.1.~'20.12.31	○ 시행기간 변경 - (좌 동) - (시행기간) '20.1.1.~'20.12.31

<수정이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P2P금융 관리·감독체계 법제화 후 시행

(6)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13·4호)

현 행 (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시행시기) '19.1.1. 이후 양도분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 (좌 동) - (시행기간) '20.1.1. 이후 양도분

<수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7)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세율 인상 유예(소득법§118의11)

정 부 안	수 정 안
○ 국외전출세* 세율 조정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 시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 적용 3억원 이하분: 20%(현행유지) 3억원 초과분: 20%→25% - (시행시기) '19.1.1.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 인상 1년 유예 - (좌 동) -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인상은 '20.1.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수정이유>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1년 유예('19년 시행→'20년 시행)된 점 감안

(8) 해외투자 자료제출 의무위반자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소득법§165의4①, 법인법§121의4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 (대상) 해외부동산 취득·운용·처분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 자 - (소명범위)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 - (소명기한) 소명요구일부터 90일 이내 (60일 내에서 1차례 연장 가능) - (소명간주) 소명 요구금액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전액을 소명한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미소명·거짓 소명한 금액의 20%	○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 대상 자산의 범위 규정 - (좌 동)
<추 가>	- (소명요구 대상자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 *해외부동산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 -'19.1.1. 이후 취득한 자산 - 소명 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자산

<수정이유> 법적 안정성 제고 및 납세협력부담 완화

법인세법

2. 법인세법

(1)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법인법§24)

정 부 안	수 정 안
○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10%→30%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 20%

<수정이유>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2)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법인법§63)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간예납의무 - (방법) ①또는 ②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②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 -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학교, 산학협력단 <추 가>	○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 (좌 동) -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수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시행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3. 종합부동산세법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환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조정(종부법§9 등)

김정우의원안(9.13대책 반영)	수 정 안
○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및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주택: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①세율 인상 및 ②3주택 이상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1%~0.5%p 추가과세 - 세부담상한 (일반) 15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신 설>	○ (좌 동) - (좌 동) - 세부담상한 조정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상향 (현행) 5년~10년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 + (신설)15년 이상 보유시 50%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한도

<수정이유>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부가가치세법

4. 부가가치세법

(1)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부가법§53의2①)

정 부 안	수 정 안
○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	○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 (좌 동)
- 클라우딩 컴퓨팅*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	- (좌 동)
<추 가>	-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추 가>	- 중개용역

<수정이유>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 제고

조세특례제한법

5. 조세특례제한법

(1)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5)

정 부 안	수 정 안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 (공제율) 중소 3%→7% 중견 1~2%→3%	- (공제율) 중소 3%→10% 중견 1~2%→5%
- (적용기한) '21.12.31.	- (좌 동)

<수정이유>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조특법§25)

<table>
<tr><th>정 부 안</th><th>수 정 안</th></tr>
<tr><td>○ 특정 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 (공제율 조정)
<table>
<tr><th>공제시설</th><th>공제율
(대·중견·중소,%)</th></tr>
<tr><td>안전시설 등</td><td>1·3·7→1·3·10</td></tr>
<tr><td>환경보전시설</td><td>1·3·10</td></tr>
<tr><td>근로자복지증진시설</td><td>7·7·10→1·3·10</td></tr>
<tr><td>R&D설비</td><td>1·3·6→1·3·7</td></tr>
<tr><td>생산성향상시설</td><td>1·3·7</td></tr>
<tr><td>에너지절약시설</td><td>1·3·6→1·3·7</td></tr>
<tr><td>직장어린이집</td><td>10·10·10</td></tr>
</table></td><td>○ 안전·환경·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 (공제율 인상)
<table>
<tr><th>공제시설</th><th>공제율
(대·중견·중소,%)</th></tr>
<tr><td>안전시설 등</td><td>1·5·10</td></tr>
<tr><td>환경보전시설</td><td>3·5·10</td></tr>
<tr><td>근로자복지증진시설</td><td>3·5·10</td></tr>
<tr><td>R&D설비</td><td rowspan="4">(좌 동)</td></tr>
<tr><td>생산성향상시설</td></tr>
<tr><td>에너지절약시설</td></tr>
<tr><td>직장어린이집</td></tr>
</table></td></tr>
</table>

<수정이유>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촉진

(3) 가속상각 적용 대상 투자자산 범위 조정(조특법§28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지원내용) 가속상각* 허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시행령 규정) - (대상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취득기간) '18.7.1.~'19.12.31.	○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대상 자산 확대 - (좌 동) - (대상자산) 중소·중견기업: 일반 사업용 자산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 (좌 동)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4) 고용증대세제 공제금액 조정(조특법§29의7)

<table>
<tr><th>정 부 안</th><th>수 정 안</th></tr>
<tr><td>○ 고용증대세제 지원 확대

- (공제금액)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500만원 추가

(단위:만원)
<table>
<tr><th colspan="2" rowspan="2"></th><th colspan="2">중소기업</th><th rowspan="2">중견기업</th><th rowspan="2">대기업</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 colspan="2">상시근로자</td><td>700</td><td>770</td><td>450</td><td>-</td></tr>
<tr><td rowspan="2">청년정규직</td><td>일반</td><td>1,000</td><td>1,100</td><td>700</td><td>300</td></tr>
<tr><td>청년친화기업</td><td>1,500</td><td>1,600</td><td>1,200</td><td>800</td></tr>
</table>

- (공제기간) 1년씩 확대
대기업 1년→2년,
중소·중견기업 2년→3년

- (적용기한) ''21.12.31.</td><td>○ 청년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조정

- (공제금액) 모든 기업에 대해 청년 정규직 고용시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단위:만원)
<table>
<tr><th rowspan="2"></th><th colspan="2">중소기업</th><th rowspan="2">중견기업</th><th rowspan="2">대기업</th></tr>
<tr><th>수도권</th><th>지방</th></tr>
<tr><td>상시근로자</td><td>700</td><td>770</td><td>450</td><td>-</td></tr>
<tr><td>청년정규직</td><td>1,100</td><td>1,200</td><td>800</td><td>400</td></tr>
</table>

- (좌 동)

- (좌 동)</td></tr>
</table>

<수정이유> 청년 정규직 고용 촉진

(5)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조특법§30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정규직 전환시 적용대상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 - (공제액) 전환인원 X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 (적용기한) '21.12.31.	○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조정 - (적용대상) '18.11.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수정이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4의14)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제조업 영위 모든 기업 ▪ 당해 제3자 물류 이용비율30%이상 ▪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 (중소기업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18.12.31.	○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적용기한) '20.12.31.

<수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이용 지원

국세기본법

6. 국세기본법

(1)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국기법§26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역외거래 개념 도입 및 관련 부과제척기간 연장 - 역외거래: 국제거래*+거주자간 국외 자산·용역 거래 *거주자-비거주자간 국내외거래 - 부과제척기간 ▪ 사기 기타 부정행위: 15년 ▪ 무신고: 7년 →10년 ▪ 과소신고:5년 →10년	○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폭 축소 - (좌 동) - 부과제척기간 ▪ (좌 동) ▪ (좌 동) ▪ 과소신고:5년 →7년

<수정이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실효성 및 납세자 부담 고려

(2)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국기법§81의5②)

정 부 안	수 정 안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규정 명문화	< 삭 제 >

<수정이유>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 효과 등 추가 검토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004, 2018.12.13)

-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는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소외 1은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주식의 매매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그 형식에 따른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1이 그 명의자를 원고로 하여 두는 방법을 통하여 재산의 객관적인 귀속 자체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실제소유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과 같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

다) 반면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원고는 실제의 소유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이 사건 제1주식을 보유하는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주식보유를 매개로 한 여러 가지 납세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자신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있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인 소외 1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원고는 부수행위 등을 수반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거기에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실제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명의수탁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인 만큼, 명의신탁의 결과로 증여세를 부담할 따름인 원고가 이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수행위 등을 동반하여 과세요건사실인 명의신탁과 같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보인다.**

-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조심2018광3743, 2018.11.30)

- (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 등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에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 등과 ○○○를 체결하여 ○○○ 등의 상표사용권 등을 승낙받고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 등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 등이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 등에게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서, 그 취지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와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사용자간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 등으로부터 승락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 ○○○ 등으로부터 국외에서 국내로 해외에 설치된 전산망을 통하여 카드거래 승인, 대금결제 및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점, ○○○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그러한 용역의 대가

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 등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것만 가지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은 ○○○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신용카드업에 부수적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등이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종전의 예규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구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은 해당 해외카드사가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후 조직변경에 따라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청구법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란에 영세율 기타매출 과세표준에 대하여 도매 및 소매업 중 상품종합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1867, 2018.11.19)

-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령 제3조에서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3호에서 운수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스크랩이 통관한 이후부터 운송, 보관,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 통관한 이후부터 공장까지 납품하는 제반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운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통계청으로부터의 회신내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동 회신내용에서 산업분류의 최종확인은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회신하고 있는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스크랩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원료 및 비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금속원료 재생업(38301)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2)으로,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으로 각 분류하면서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75999)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으로 설명하면서 가스, 전기, 수도 계량대리와 상품권 판매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로부터 ○○○에 스크랩 등을 분류, 분리하여 보관, 운송하는 사업의 중간단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란에 영세율 기타매출 과세표준에 대하여 도매 및 소매업 중 상품종합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 무 소 개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